

인천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2640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손무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변승국

변론 종결2021. 9. 15.

판결 선고2021. 10. 13.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9. 12. 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15,6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9. 1. 5.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8. 10. 31. 합계 49,336,902원 상당의 강관 등을, 2018. 11. 30. 합계 134,869,376원 상당의 강관 등을, 2019. 7. 31. 27,871,100원 상당의 강관을 각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11.부터 2020. 6. 12.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공급에 관하여 합계 9,587,254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2018. 10. 31.자 물품대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9. 12. 9.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1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였다.

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11.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1. 8. 10.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일'이라 한다)에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아. 한편, 원고는 2014. 2. 12.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12,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일까지 2018. 10. 31.자 물품대금 39,749,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7,606,947원, 2018. 11. 30.자 물품대금 134,869,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90,898,264원, 2019. 7. 31.자 물품대금 27,87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4,145,538원을

모두 합한 335,140,873원의 채권이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배당일에서 배당받은 1억 5,000만 원을 위 지연이자 합계 132,650,749원에 충당한 후 나머지 배당금 17,349,251원을 2018. 10. 31.자 물품대금 원금에 충당하면, 2021. 9. 15.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물품대금 원금 합계 185,140,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4,438,309원을 합한 189,579,182원이 된다. 위 금원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질권을 통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157,063,50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32,515,682원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무자력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32,515,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서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지체 기준에 관하여 '판매월말 기준 180일 초과시'로 정하고 있으면서, 위의 경우 연 7.5%의 지체이율이 적용되고,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지체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중 제11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25%의 지체이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 및 공매, 조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 파산, 해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9,587,254원을 2018. 10. 31.자 물품대금 원금에 충당한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11.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연 25%의 지체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중 제11조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8. 10. 31.자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19. 4. 28., 2018. 11. 30.자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19. 5. 28., 2019. 7. 31.자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20. 1. 26.이라고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던 2018. 10. 31.자 및 2018. 11. 30.자 각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연 7.5%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비로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2019. 7. 31.자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연 25%의 각 지체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배당일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4,631,193원(= 202,490,124원 + 42,141,069원)이 된다.

2018. 10. 31.	2019. 3. 31.	2019. 4. 1.	2021. 8. 10.	7.5%	39,749,648	7,048,7564) 39,749,648원 × 7.5% × 863일/365일
2018. 11. 30.	2019. 4. 30.	2019. 5. 1.	2021. 8. 10.	7.5%	134,869,376	23,084,8335) 134,869,376원 × 7.5% × 833일/365일
2019. 7. 31.	2019. 12. 31.	2019. 11. 21.	2021. 8. 10.	25%	27,871,100	12,007,4806) 27,871,100원 × 25% × 629일/365일
합계	202,490,124	42,141,069				

(나) 이 사건 배당일에 원고가 받은 배당금 1억 5,000만 원은 우선 위 지연이자 42,141,069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배당금 107,858,931원(= 1억 5,000만 원 - 42,141,069원)은 위 각 물품대금 중 지체이율이 높은 2019. 7. 31.자 물품대금 27,871,100원에 우선 충당된다. 그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배당금 79,987,831원(= 107,858,931원 - 27,871,100원)을 변제기가 더 앞선 2018. 10. 31.자 물품대금 39,749,648원에 충당하면 나머지 배당금 40,238,183원(= 79,987,831원 -

39,749,648원)은 2018. 11. 30.자 물품대금 134,869,376원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일 기준 위 배당금을 변제충당하고 난 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2018. 11. 30.자 물품대금 94,631,193원(= 134,869,376원 - 40,238,1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일 다음날인 2021. 8. 11.부터 연 7.5%의 지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15.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94,631,193원 및 지연이자 700,011원(= 94,631,193원 × 7.5% × 36일/365일) 합계 95,331,204원(= 94,631,193원 + 700,011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질권을 통하여 157,063,500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 우선변제권 확보액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할 수 없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진수

별지

1) 피고가 앞서 본 변제기보다 피고에게 불리한 위 각 변제기를 주장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판단한다.

2) 단위 : 원, 이하 같다.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39,749,648\text{원} \times 7.5\% \times 863\text{일}/365\text{일}$

5) $134,869,376\text{원} \times 7.5\% \times 833\text{일}/365\text{일}$

6) $27,871,100\text{원} \times 25\% \times 629\text{일}/365\text{일}$